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35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6.

판결 선고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773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8. 1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장수영

별지